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84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247,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238,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28. 설립되어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2010. 11. 5. '[redacted]구 B', 2015. 7. 1. '[redacted]구 C', 2018. 6. 1. '[redacted]구 B'으로 각 이전하였다(이하 위 각 본점을 통틀어 'D 본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4. 4. 28. [redacted]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G호 및 지상 5 내지 8층 연면적 합계 6,280.11㎡을 원고 명의로 구분소유등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신축가액 13,379,473,6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 및 감면율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11,395,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G호(연면적 322.21㎡) 및 5층 일부(연면적 1,437.92㎡,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원고의 본점 조직인 전산부서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위 부분을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신축가액 4,147,004,1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30,225,400원, 농어촌특별세 10,565,210원 합계 140,790,610원(각 가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세 포함)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1층 G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6. 17.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취득세 26,977,870원, 농어촌특별세 2,326,570원 합계 29,304,440원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선행 처분은 취득세 103,247,530원, 농어촌특별세 8,238,640원, 합계 111,486,17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IT 본부 내 시스템운영실 직원들이 서버실 전산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곳으로, 원고의 중추적 의사결정 또는 사업부문의 총괄, 조정 등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무실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

가) 피고는 [redacted]시의 지방세 지도점검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IT 본부 내 시스템운영실 직원들이 서버실 전산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곳인데, 시스템운영실은 IT 본부 소속으로 D 본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산,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등 IT 관련 업무를 운영,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6장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2017. 8. 2.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원고 및 E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 등을 질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 및 E에게 '전산용역계약서(시설사용료, 사용면적 등 포함)'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8. 7. [redacted]구청을 방문하여, 임대계약서 및 사용현황, 유형자산 원장, E와 계열사와의 전산용역계약서, 원고의 자가사용 현황(사용시작일, 배치도) 등을 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2017. 10. 1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을 한차례 방문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전산용역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을 뿐인바, 그 방식이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내용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자신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적법 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납세자의 과세신고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무조사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질의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것을 들어 사전통지가 요구되는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 중 1층 G호 및 5 내지 8층은 원고 소유로, 1층 H호 및 2층부터 4층까지는 E 소유로 각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2)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종래 D 본점에 있던 전산서버 장비를 이전하여 서버실로 운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무실에는 종래 D 본점에 있던 원고의 시스템운영실이 이전하여 I 등 직원 11명이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서버실 전산서버 장비의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직원이 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급은 차장이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조직도에 의하면, 원고는 CB 총괄팀 산하의 6개 본부(ISC 사업본부, CB 사업1본부, CB 사업2본부, CB 운영본부, E-Biz 사업본부, E 인프라 사업본부)와 그 밖의 4개 본부(정보 사업본부, 컨설팅 사업본부, IT 본부, 경영관리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시스템운영실은 IT 본부의 하부 조직 3개 중 하나이다.

(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제 세칙(2014. 6. 13.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시스템운영실이 운영하는 업무는 ① 시스템 운영 업무(시스템 기획 및 구성 설계, 서버 운영 및 장애조치, 스토리지 운영 및 장애조치,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② 통신 및 네트워크 운영 업무(네트워크 기획 및 구성 설계, 통신장비 운영 및 장애조치, 통신회선 및 구내통신 운영,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③ IT 운영 관리시스템 업무(백업시스템 및 백업정책 운영, 관제시스템 및 정책 운영,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 ④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업무이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40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D 본점에 있던 전산서버가 이전되었고, 위 전산서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D 본점에 있던 시스템운영실의 시설 및 인력도 함께 이 사건 사무실로 이전되었는바, 이 사건 사무실은 D 본점 사무실 일부가 그대로 이전된 것과 다르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직제상 시스템운영실은 시스템 운영 업무, 통신 및 네트워크 운영 업무, IT 운영 관리시스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로는 원고의 전산서버를 운영,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와 같은 시스템과 통신 및 네트워크 등의 운영, 관리 업무는 원고의 업무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는 원고의 인력들 중 가장 높은 직급은 중간관리직인 차장급이고, 임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주로 전산서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사무실에서 D 본점에 있는 임직원과 소통하며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의 본점 조직의 일부인 시스템운영실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제5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9-16

■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끝.